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 **475**

제출일자 : 2009. 4. 27.

제 출자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위원회의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정비계획과 우리시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하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09. 3. 27. ~ 4. 17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하수번시행령

제40조 (지하수관리위원회)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**토해양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.** <개정 2008.2.29>

- 1.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3. 그밖에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시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시항
-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**시·도에**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5.11.30>
 - 1.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 또는 시·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
 - 2.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밖에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 도지사가 부의하는 시항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,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 또는 시 ·군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[전문개정 2001.12.19]

□지하수법

제6조 (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 발·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**10년 단** 위의 地下水管理基本計劃(이하 "基本計劃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2. 지하수의 이용실태

3. 지하수의 이용계획

4. 지하수의 보전계획

4의2.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5.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

제6조의2 (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(이하 "지역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>

□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07-10-05 조례 제 357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수법 시행령」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대전광역시의회의원
 - 2. 「지하수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
 - 3.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
 - 4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
- 5. 수리지질, 응용지질, 수문, 환경,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정책과장이 되고,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6조(수당 등)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규정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2007. 10. 05 조례 제3575호)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참고자료

□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폐지관련 자료

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-833호

『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

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정부위원회 정비계획('08.6.2)에 따라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아울러, 지하수법시행령상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 조항도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근거규정 삭제 등 정비(시행령 안 제40조제1항 삭제 및 제4항 개정)
 - (1)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수관리 위원회를 우선 폐지
- 나.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시행규칙 안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9까지 삭제)
- (1)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근거를 잃은 지하수법시행규칙상의 위원회 관련조항도 함께 정비
-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(안 제30조의2),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(안 제30조의3), 중앙위원회의 회의(안 제30조의4) 및 중앙위원회의전문위원(안 제30조의5) 등의 조항 삭제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(참조 : 수자원정책과, 전화번호 02)2110-8406, FAX 02)503-739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
- ※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) 법령정보(입법예고) 참조

대통령령 제 호

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하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 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